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「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양질의 면학기회 제공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교육원 소재지를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8(舊성주군보건소)로 규정(안 제3조)

○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)

○ 교육원 수탁자는 건축물 증·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준공과 동시에 성주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,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수탁자 의무를 규정(안 제7조)

○ 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며,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추천 및 선발기준을 규정(안 제9조)

○ 교육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 10조)

○ 군수는 교육원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규정(안 제11조)

○ 교육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규정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☐ 제출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☐ 본 제정조례안은

○ 양질의 면학기회 제공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,

○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교육원 수탁자는 건축물 증·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준공과 동시에 성주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,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수탁자 의무를 규정하였고,

○ 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며, 교육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정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**제 출 자** : 성 주 군 수

2. **제정이유**

「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「성주군 별고을 교육원」운영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 재단의 공익성 유지 및 건전한 활동을 지원 하고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○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, 장학시설 설치 운영 및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4조)

○ 장학회의 재원은 인재육성 기금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출연금, 법인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)

○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9조)

○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1조)

4. **관련법령**

○「민법 」제32조 및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□ 본 제정조례안은

○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 재단의 공익성 유지 및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

○ 장학회의 재원은 인재육성 기금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출연금, 법인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조례로 법리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「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」로 전부 개정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경비(강사진 운영 등)로 활용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자치단체 출연금, 이자수입 등으로 인재육성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 규정(안 제2조)

○ 인재육성 기금으로 장학사업,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조성기금 출연, 「성주군 별고을 교육원」 운영(강사진 운영 등) 경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 규정(안 제3조)

○ 인재육성 기금의 관리 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(안 제7조 및 제10조)

○ 별고을 장학생의 선발 계획 수립과 장학생 추천 및 선발 기준, 장학금 지급 방법 등을 규정(안 제14조 내지 제17조)

4. 관련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조례안은

○「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를 「성주군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」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서

○ 자치단체출연금, 이자수입등으로 인재육성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, 기금의 용도는 장학사업 및 별고을 장학회설립 및 조성기금출연, 성주군별고을교육원 강사진운영경비로 활용하는 등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